

된다. 등록공무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내용의 일부 인용에 불복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법원(Valuation Tribunal)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구제 절차는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어떠한 종류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공무원이 이의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10. 평가법원의 지위

평가법원은 council과 평가청의 지역 사무소와는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judicial body)이다. 일단 소가 제기되면 평가법원은 원고와 접촉하여 청문 절차 등을 협의하게 되며 자세한 재판절차에 관한 책자를 원고에게 송부해 준다. 원고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 한 청문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않는다. 평가법원

의 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High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재판 계류중에도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11. 준공통보(Completion Notices)

council 정부는 건축물이 완공되어 council tax의 과세대상 주택이 되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준공 예정일, 개축건물의 개축공사 완공 예정시기와 함께 준공·완공시에 평가가격을 통보한다. 이 통보는 준공 또는 완공시기를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데에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4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IV. 세액의 결정

1. 세액 결정의 변수

council tax는 council에 의해 결정된다. 납세자 개인이 납부하게 될 세액은 주택의 가액, 자치단체의 지출 예산과 다른 세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